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08 ~ 27 |
|----------|-----------|

| | |
|-------|--------------|
| 제출연월일 | 2008. 6. 30.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실용조직 기조에 따라 유사기능 및 세분화된 기구를 통폐합 및 조정하여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 본청의 실과단의 직제순 변경 및 실과통합, 명칭변경(안 제3조)

-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
- 종합민원실 → 민원봉사과로 명칭변경
-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
- 전략사업추진단 → 1010추진단으로 명칭변경

나. 한시기구 만료 및 업무추가(안 제3조)

- 혁신분권업무(행정과) → 삭제
-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업무(1010추진단) → 추가
- 기업유치 업무(1010추진단) → 추가

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번호 변경(안 제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6. 23. ~ 7. 3.)결과 : 재난안전관리과 명칭변경 반영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을 “재난관리과, 1010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3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제6호에 마목·바목·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바.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사. 장애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12호 본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제13호 본문 중 “전략사업추진단장”을 “1010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마목으로, 다목·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라. 기업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에 제2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2호로 하고,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실·과·단의 설치) ① <u>군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을 둔다.</u></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종합민원실장</u> 가. ~ 마. (생략)</p> <p>3. (생략) 가. ~ 라. (생략) 마. <u>지역혁신·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u></p> <p>4. (생략)</p> <p>5. (생략)</p> <p>6. (생략) 가. ~ 라. (생략) <u><신설></u></p> <p>7. <u>사회복지과장</u> 가. <u>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u> 나. <u>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u></p> | <p>제3조(실·과·단의 설치) ①----- -----<u>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u>----- ----- -----<u>재난관리과, 1010추진단</u> -----.</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5. <u>민원봉사과장</u> 가. ~ 마. (현행 제2호가목 ~ 마목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u><삭제></u></p> <p>4. (현행과 같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2. (현행 제6호와 같음) 가. ~ 라. (현행 제6호가목 ~ 라목과 같음)</p> <p>마. <u>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u> 바. <u>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u> 사. <u>장애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사항</u></p> <p><u><삭제></u></p>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다. 장애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에 관한사항</u></p> <p>8. ~ 11. (생략)</p> <p>12. <u>재난안전관리과장</u> 가. ~ 라. (생략)</p> <p>13. <u>전략사업추진단장</u> 가. ~ 나. (생략) <신설></p> <p><u>다.</u> (생략)</p> <p>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사업 및 농업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p> | <p>7. ~ 10. (현행 제8호~제11호와 같음)</p> <p>11. <u>재난관리과장</u> 가. ~ 라. (현행 제12호가목 ~라목과 같음)</p> <p>12. 1010추진단장 가. ~ 나. (현행 제13호가목 ~ 나목과 같음) <u>다.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u> <u>라. 기업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u> <u>마.</u> (현행 제13호다목과 같음)</p> <p>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